

NEWSLETTER

August 2022

지식재산권 그룹

Intellectual Property Group

CONTACT



변호사 김운호

T: 02.772.4695
E: unho.kim@leeko.com

변호사 박환성

T: 02.772.4380
E: hwansung.park@leeko.com

변호사 김홍선

T: 02.772.4417
E: hongseon.kim@leeko.com

변호사 곽재우

T: 02.772.4985
E: jaewoo.kwak@leeko.com

변호사 김민수

T: 02.772.5961
E: minsoo.kim@leeko.com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첨단전략기술을 보호, 육성하여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를 지키고,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최근 모두 시행되었기에,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적용대상 및 범위(2022. 2. 3. 제정/2022. 8. 4. 시행)

구분	내용
전략기술 및 전략산업의 정의(제2조)	■ 국가첨단전략기술(전략기술):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 ■ 국가첨단전략산업(전략산업): 전략기술을 연구·개발·사업화하거나 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업화하는 산업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 전략산업등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
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제11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음 ■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음

2.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주요 내용

■ 전략기술 관련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정부는 천재지변, 국제통상여건의 급변 등으로 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안정적 수급과 산업 공급망의 원활한 기능에 지장이 초래되고 국민경제 활동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사업자 등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해 생산계획/공급계획의 수립·실시 및 변경, 수급을 위한 물류·유통구조 정비 및 관련 시설의 개선·확충, 대체품목의 실증과 성능검증과 같은 조정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 전략기술 수출 및 전략기술보유자 해외인수·합병시 승인 필요

전략기술보유자가 해당 전략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및 해외인수·합병, 합자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만약 승인 없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전략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제12조 제4항, 제13조 제7항, 제15조 제5호 및 제6호, 제50조).

■ 전략기술보유자의 보호조치 의무 규정

전략기술보유자는 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1)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출입 시 휴대품 검사, 2)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이직관리 및 비밀유지 계약 체결, 3) 기타 전략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14조 제1항, 시행령 제23조).

■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법에 따라 금지되는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의 유형에는 1)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략기술을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 2) 계약 등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 사용,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위반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전략기술을 사용, 공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제15조). 또한, 그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유사 법률인 산업기술보호법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50조).

■ 자료제출 의무 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략산업등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략산업등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사무소, 사업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45조 제1항, 제2항).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출입·검사 등을 거부·기피·방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제51조 제1항).

■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은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고(제29조 제1항),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 사업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제31조),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과 투자촉진 지원과 관련한 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제34조)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사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하여, 전략기술보유자는 전략기술 보호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고용함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전략기술 관련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첨단전략기술 관련 수급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조정이나 세제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전략기술 관련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한 경우 각종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민원 제기시 신속처리 혜택을 누리는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전략기술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산업기술보호법의 국가핵심기술 침해행위를 한 자에 비하여 처벌 수위를 더욱 높임으로써 전략기술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략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거나, 해외 인수·합병등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전략기술 산업등 관련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및 검사 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하고 있어 사실상 자료 제출 및 검사 수용이 강제되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제출 요청 자료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정부 쪽과 영업비밀을 비롯한 민감한 자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전략기술보유자 사이에 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실무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바, 향후 정부의 유권해석 및 관련 판례의 입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올해 9~10월 중으로 전략기술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으므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전략기술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 관련 고시 등의 발령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의 보호 이외에도 산업기술·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부정경쟁행위·전직금지 대응 등과 관련하여 쌓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

Lee
& KO
법무법인(유) 광장

서울사무소 :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우 04532)

판교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31, 판교테크원타워 3층 (우 13529)

Tel : 02-772-4000 | Fax : 02-772-4001/2 | E-mail : mail@leeko.com | www.leeko.com